

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·제도 개선
건의사항 보고

2024. 12.

기후환경본부

□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

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
「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·제도 개선 건의사항」을
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기후환경본부는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과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대해

총 2건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.

□ 현재 5톤 미만 발생하는

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, 재활용 기준 등에 관한
의무 규정이 없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

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

□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대해

건설폐기물은 기준용량을 1톤 이상으로

처리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 건의하였고

□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대해

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기준용량을 1톤 미만으로

처리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.

□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